

- 2022학년도 제9차 - 규정심의위원회

2022. 8. 4.

〈심의 안건〉

1. 3-1-5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교무학사팀)
2. 4-1-9 「외국인학생규정」 개정에 관한 건(글로벌교육지원센터)
3. 2-1-5 「현장실습학기제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현장실습지원센터)
4. 3-1-1 「직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5. 3-1-2 「업무분장규정」 개정에 관한 건(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6. 8-1-31 「인지과학연구소」 개정에 관한 건(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7. 9-1-2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8. 9-1-5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정」 개정에 관한 건(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9. 3-1-1 「직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LINC3.0사업단)

규정 개정 요청서

규 정 명	3-1-5 교원인사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 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교원업적평가 제16조(평가의 예외)의 제1항의 내용에 맞춰 교원의 휴직 기간을 재임용 유예기간으로 본인이 선택 적용하고자 함		
관련근거	·		
기대효과	·		
주요내용	· 휴직 교원 이력 교원의 재임용 기간 산정 명시화		
기타사항			
참고사항			
첨 부	·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규정 전문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29조(재임용 유예)①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을 유예받은 교원은 재임용 유예기간 내에 당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임용 유예는 당해 직급에서 1회에 한한다. ③제1항에 의해 재임용이 유예된 교원이 유예기간 동안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 퇴직한다. ④재임용 대상교원이 <u>휴직중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u>	제29조(재임용 유예)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재임용 대상교원이 <u>휴직 기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재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임용을 유예할 수 없다.</u>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외국인학생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글로벌교육지원센터		
관련부서	대학원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특이사항 없음		
개정 사유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루트 다양화 등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어능력 입학기준 세분화		
관련근거	· 외국인학생규정		
기대효과	·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에 따른 유치 인원 확대		
주요내용	· 한국어능력 입학기준 세분화		
기타사항			
참고사항			
첨 부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외국인학생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3조(한국어능력에 따른 입학기준) ①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신(편)입학 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TOPIK 3급 이상 취득으로 한다. (개정 2012.3.29., 2014.3.5.) 1. <삭제 2011.10.12.> 2. <삭제 2011.10.12.>	제3조(한국어능력에 따른 입학기준) 현행과 동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학부과정 신입생 2. 교환학생 3. 정부초청 장학생 4.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5.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학부 편입생 및 대학원 신·편입생 6. 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의 학부 편입생 및 대학원 신·편입생 (호 신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u>1. 교환학생</u> <u>2. 정부초청 장학생</u> <u>3. 외국정부지원 장학생</u> <u>4. 교류대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학부 <삭제> 및 대학원 신·편입생</u> <u>5. 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의 학부 <삭제> 및 대학원 신·편입생</u> <u>6. WOW-TOPIK 3급 이상</u> <u>7.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수료</u> <u>8. 우리 대학 한국어 연수 3개 학기 이상 수료</u> <u>9. 국외 교류대학에 국외파견의 경우 TOPIK 급수 미적용</u> [본항 개정 2022.00.00]
③학부과정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본교 한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 3학기 이상 수료(개정 2016.12.26., 2019.3.8.) 2. 본교 한국어교육지원센터의 TOPIK 3급 과정을 수료 (개정 2014.3.5., 2016.12.26., 2019.3.8.)	<u>③ <삭제></u>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현장실습학기제시행규칙」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 · 개정 폐지사유	• ‘ICT학점연계 인턴십 현장실습’ 내용 추가		
관련근거	•		
기대효과	•		
주요내용	•		
기타사항	•		
참고사항	•		
	• 제 · 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규정의 제 · 개정 및 폐지로 인해 변경사항이 필요한 모든 사항 기재)		
첨 부	• 「현장실습학기제시행규칙」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교육과정 편성)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과 자율현장실습, (신설)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교육과정 편성)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 자율현장실습, ICT학점연계 인턴십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현장실습

1. 현행과 같음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비고	
계절제	표준현장 실습 1	1-1	4주	3학점	최소 20일 이상
		1-2			
		1-3			
		1-4			
	표준현장 실습 2	2-1	8주	6학점	최소 40일 이상
		2-2			
		2-3			
		2-4			
학기제	표준현장실 습 3	3-1	16주	15학점	최소 80일 이상
		3-2			
	표준현장 실습 4	4-1	20주	18학점	최소 100일 이상
		4-2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비고	
계절제	자율현장 실습 1	1-1	4주	3학점	최소 20일 이상
		1-2			
		1-3			
		1-4			
	자율현장 실습 2	2-1	8주	6학점	최소 40일 이상
		2-2			
		2-3			
		2-4			
학기제	자율현장실 습 3	3-1	16주	15학점	최소 80일 이상
		3-2			
	자율현장 실습 4	4-1	20주	18학점	최소 100일 이상
		4-2			

3. (호 신설)

3. ICT학점연계 인턴십 현장실습

구분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실습 기간	인정 학점	비고	
학기제	ICT학점연계 인턴십 현장실습1	1-1	16주 이상	15학점	최소 80일 이상
		1-2			
	ICT학점연계 인턴십 현장실습2	2-1	20주이 상	18학점	최소 100일 이상
		2-2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직제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산학협력실		
관련부서	기획평가팀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 회	특이사항 없음		
제정 · 개정 폐지사유	· 부서신설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관련근거	· 직제규정		
기대효과	·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및 LINC3.0사업 수행 지원		
주요내용	·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조직설치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업무분장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규정		
	제 · 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수정 및 게시		
첨 부	·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조직) ①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와 지역혁신센터를 둔다. (개정 2011.6.28., 2012.5.15., 2014.11.6., 2015.2.26., 2015.8.11., 2017.7.31., 2018.12.6., 2020.1.16., 2020.4.29.) ②산학협력단의 실장 및 센터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11.6.28., 2012.5.15., 2017.7.31., 2018.12.6.) ③<삭 제>	제28조(조직) ①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와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를 둔다. (개정 2011.6.28., 2012.5.15., 2014.11.6., 2015.2.26., 2015.8.11., 2017.7.31., 2018.12.6., 2020.1.16., 2020.4.29.) ②산학협력단의 실장 및 센터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11.6.28., 2012.5.15., 2017.7.31., 2018.12.6.) ③<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업무분장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산학협력실		
관련부서	기획평가팀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 · 개정 폐지사유	·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분장규정 개정		
관련근거	· 업무분장규정		
기대효과	·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및 LINC3.0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주요내용	· 센터 설치 및 조직개편사항 반영		
기타사항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창업지원단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삭제		
참고사항	관련규정 : 직제규정,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규정		
	제 · 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수정 및 게시		
첨 부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6조의9(창업보육센터)</u> 창업보육센터의 업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조 신설] [조 신설] [조 신설]	<u>제26조의9(창업보육센터)</u> <삭제> <u>제26조의10(기술이전센터)</u> 기술이전센터의 업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u>제26조의11(지역혁신센터)</u> 지역혁신센터의 업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u>제26조의12(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u>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의 업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인지과학연구소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산학협력실		
관련부서	기획평가팀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특이사항 없음		
제정 · 개정 폐지사유	· 연구부소장 직위 신설 필요에 따른 인지과학연구소규정 개정		
관련근거	·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대효과	· 연구소 사업 및 사무 업무 활성화		
주요내용	· 구성에 연구부소장 추가 · 연구부소장 항목 신설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 ·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 · 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수정 및 게시		
첨 부	· 신 · 구조문 대비표, 인지과학연구소규정 개정(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①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신설) 부장, 연구위원, 연구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5.) ②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를 두며, 각 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 2017.10.25.) 1. 기획부 : 기획, 사무행정, 해외관련업무, 제반 학술회의 2. 연구부 : 제반 연구학술업무 가. 연구1부(인지과학) : 지능, 인지 등 인지과학 분야와 인류학, 인문학, 철학 등 융합분야 나. 연구2부(심리운동학) : 심리운동학, 특수교육, 심리상담 등 치료 및 교육 분야 다. 연구3부(관찰·진단) : 관찰·진단, 선별 등 진단분야 라. 연구4부(적용) : 인권실태 분석, 조사, 관찰분야 3. 연구지원부 : 기타 지원 업무	제4조(구성) ①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u>연구부</u> <u>소장</u>, 부장, 연구위원, 연구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구소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 3. 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6.2) ②(삭제 2016.6.2) ③(삭제 2016.6.2) ④(삭제 2016.6.2) ⑤(삭제 2016.6.2) ⑥(삭제 2016.6.2)	제5조(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연구, 사업 및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2) ②연구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현행과 같음
[조 신설]	제6조2(연구부소장) ①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장의 지휘 하에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연구부소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부장) ①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해당 부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6.2., 2017.10.25)	제7조(부장)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위원) ①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6.2., 2017.10.25) ②전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인지과학분야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위원)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원) ①연구자료 수집 등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연구원)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연구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5) ②간사는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25)	제10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교비 지원과 기타 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6.2)	제11조(재정)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신설 2017.10.25)	제12조(회계)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5)	제13조(준용)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 산학협력실		
관련부서	· 산학협력 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특이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및 LINC3.0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관련근거	· 대학 직제규정		
기대효과	· 산학협력중장기발전계획 및 LINC3.0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주요내용	· 산학협력 관련 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조정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관련규정: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수정 및 게시		
첨 부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운영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4조(조직)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우석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1.7.1., 2013.1.16.) ②부단장은 우석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3.1.16.) ③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를 둔다. 산학협력실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 산학진흥팀을 두고, 연구지원실에는 연구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신설 2011.7.1., 개정 2013.1.16., 2015.2.11., 2015.8.11., 2016.4.18., 2017.11.6., 2020.3.13.) ④단장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융합혁신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두며, 산하에 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1.22.) ⑤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부설기관(센터, 연구소, 사업단)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 2013.1.16., 2013.10.1., 2014.8.29., 2014.11.6., 2015.1.6., 2015.2.11., 2015.2.27., 2015.5.13., 2015.6.5., 2015.8.11., 2015.10.28., 2016.4.18., 2016.6.17., 2016.6.23., 2016.10.1., 2017.4.11., 2017.11.6., 2018.1.1., 2018.5.25., 2018.11.7., 2018.12.20., 2019.1.22., 2019.3.7., 2019.5.24., 2020.3.13., 2020.5.13., 2020.7.16., 2021.3.11., 2022.2.22., 2022.6.21.) ⑥산학협력단에 총장이 지정하는 사회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⑦(신설2011.7.1., 삭제 2013.1.16.)	제4조(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u>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u>를 둔다. 산학협력실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운영팀, 산학진흥팀을 두고, 연구지원실에는 연구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신설 2011.7.1., 개정 2013.1.16., 2015.2.11., 2015.8.11., 2016.4.18., 2017.11.6., 2020.3.13.) ④현행과 같음 ⑤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부설기관(센터, 연구소, 사업단)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둘 수 있으며 <u>[별표]</u>와 같다. (개정 2011.7.1., 2013.1.16., 2013.10.1., 2014.8.29., 2014.11.6., 2015.1.6., 2015.2.11., 2015.2.27., 2015.5.13., 2015.6.5., 2015.8.11., 2015.10.28., 2016.4.18., 2016.6.17., 2016.6.23., 2016.10.1., 2017.4.11., 2017.11.6., 2018.1.1., 2018.5.25., 2018.11.7., 2018.12.20., 2019.1.22., 2019.3.7., 2019.5.24., 2020.3.13., 2020.5.13., 2020.7.16., 2021.3.11., 2022.2.22., 2022.6.21., <u>2022.0.0</u>) ⑥산학협력단에 총장이 지정하는 사회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⑦(신설2011.7.1., 삭제 2013.1.16.)

현행	정(안)
제 5 장 산학협력위원회	제 5 장 산학연협력위원회 [전면개정 2022.0.0.]
제13조(목적) 본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제24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목적) 본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제24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0.)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호 신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1. 대학 산·학·연·관 협력 관련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2. 현행과 같음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부단장을 포함하여 교내 교직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체의 대표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 2018.5.25.)	제15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교내 교직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체의 대표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조 신설]	제17조(위원장)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17조2(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관리한다
제1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8조(임기)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산학협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04.)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04.)

현행	개정(안)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22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관장) 현행과 같음 제23조(재정) 현행과 같음 제24조(비밀엄수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 6 장 인사위원회 제25조(인사위원회) ①산학협력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부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③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26조(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학협력단 인사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직원 전환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직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1.22.) 6. 기타 산학협력단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 제27조(소집과 의결) 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제 6 장 인사위원회 제25조 (인사위원회) ①~④현행과 같음 제26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집과 의결) 현행과 같음 제28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안)
한다. (개정 2022.04.04.) 제2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장 신설]	제29조(간사) 현행과 같음 제 7 장 산학연성과활용위원회 제30조(목적) 본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협력성과의 체계적인 실행과 외부평가 및 내부 목표달성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연성과활용위원회(이하 제42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 산·학·연·관 협력사업 성과창출 및 기술사업화 관리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정보 수집 및 분석 3. 산·학·연·관 협력사업 정보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신규사업 기획 4. 대학 산·학·연·관 연계부서의 업무 조율 및 관리 5. 기타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을 포함하여 교내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장) 위원장은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3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 세칙을 제외하고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사를 둔다. 제39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에서 관장한다. 제40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8 장 보 칙	
제4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 세칙을 제외하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 세칙을 제외하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별표] (개정 2022.7.1.)	

규정 제정·개정·폐지 요청서

규 정 명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 산학협력실		
관련부서	· 산학협력 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특이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관련근거	· 대학 업무분장규정		
기대효과	· 산학협력사업 정보 및 성과 통합관리 지원		
주요내용	· 산학협력 정보 및 성과 통합관리 역할 수행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관련규정: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규정		
	·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관련규정 및 지침 등 수정 및 게시		
첨 부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14조(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대학산학연 정보 및 성과 통합관리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정보 수집 및 분석 3. 수집된 정보를 통한 성과발굴 및 사업화 4. 산학연성과활용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	제14조(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현행과 같음 1. <u>산학협력정보담당관으로서</u> 대학산학연 정보 및 성과 통합관리를 <u>위한 역할수행</u> 2.~5. 현행과 같음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직제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LINC 3.0 사무국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 · 개정 폐지사유	•LINC3.0사업단 부단장에 대한 직제 삽입		
관련근거	•		
기대효과	•		
주요내용	•		
기타사항	•		
참고사항	•		
	•제 · 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규정의 제 · 개정 및 폐지로 인해 변경사항이 필요한 모든 사항 기재)		
첨 부	•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개정 2010.9.30., 2011.6.28.,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7.31.,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②총장 직속기관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개정 2009.12.29., 2018.12.6.) (항 신설)	제16조(총장 직속기관장) ①LINC3.0사업단, 특성화추진단, 대학일자리본부, 교육혁신본부, 국제교류원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비서실, 창업지원단, 인권센터의 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연구단의 장은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한다. (개정 2010.9.30., 2011.6.28., 2012.5.15., 2013.2.1., 2014.8.26., 2014.9.11., 2014.10.21, 2014.11.6., 2016.4.28., 2017.4.27., 2017.7.31., 2017.8.30., 2018.6.28., 2018.12.6., 2020.1.16., 2022.3.22., 2022.6.30.) ②총장 직속기관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개정 2009.12.29., 2018.12.6.) <u>③LINC3.0사업단에는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u>